

전주지방법원 2021. 8. 11 선고 2020가단2241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8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,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. 10.경부터 2019. 12.경까지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해 왔는데,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,000만 원 정도인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갚은 돈은 1억 6,000만 원 이상이다.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, 우선 3,100만 원을 일부 청구한다.

2. 판단

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성실